

醫療保險法 중 改正法律

法律 제 3166 호 4 월 17 일 公 布

醫療保險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軍人年金法의 該當者나 公務員 및 私立 學校教職員 醫療保險法 其他 다른 法律에 의하여 醫療保險에 加入된 者 및 醫療保護法에 의한 保護를 받는者는 除外한다.

第32條中 「保險者가」를 「保險者 또는 保險者로 構成된 團體(이하 「保險者團體」라 한다)가」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내지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保險者 또는 保險者團體는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함에 있어서 必要한 때에는 醫師會·齒科醫師會·藥師會 其他 醫藥關係團體(이하 「醫藥關係團體」라 한다)와 協議하여 指定하고 그 指定通報를 醫藥關係團體에 依賴할 수 있다.

③ 醫藥關係團體는 第2項의 指定通報依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을 해당 醫療機關 또는 藥局에 通報하여야 한다.

④ 保健社會部長官은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保險者 또는 保險者 團體에 대하여 療養取扱機關을 指定하게 할 수 있다.

⑤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醫療機關 및 藥局은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第3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5條(療養의 費用등) ① 療養給與나 分娩給與에 관한 費用은 保健社會部長官이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한 基準에 의하여 算定한 金

額으로 한다.

② 保險者는 療養取扱機關으로부터 療養給與나 分娩給與에 관한 費用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審査 支給한다.

③ 保健社會部長官은 第2項의 審査·支給에 관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保險者로 하여금 當해 業務를 다른 전문기관에 委託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保險者나 療養取扱機關의 療養에 관한 指示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給與의 全部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5條의 題目 「保險料의 督促」을 保險料의 督促 및 滯納處分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保險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保險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事業場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稅務署에 委託하여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55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5條의 2(延滯金) 保險者는 保險料를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金額 100 원에 대하여 1日6전의 比率로 納付期限 滿了日 다음날 부터 保險料 完納前日 까지의 日數에 의하여 計算한 延滯金을 徵收한다.

第70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保險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신고 또는 제출받은 資料에 대한 事實與否를 確認할 必要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當該事項에 關하여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第71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1條의 2 (資格停止) 保健社會部長官은 療養取扱機關에 종사하는 者가 療養給與機準 또는 療養給與費用의 算定基準을 위반하여 不當하게 保險給與를 하였거나 保險給與 費用을 要求한 때에는 1年以下の 免許資格의 停止處分을 할 수 있다.

第76條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正當한 理由없이 第63條 第70條 第1項 또는 第7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의 提出意見의 陳述 申告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者 虛偽로 陳述 申告 또는 보고를 하거나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

第7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7條 (罰則) 第16條 (第27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包含한다) 또는 第32條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0條中 第2號를 삭제하고 第3號를 第2號로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제 21 회 세미나 안내

주제 : 병원사목

일시 : 1979. 5. 25

장소 : 서울 상지회관

09 : 30 등 목

10 : 00 협회장 인사

10 : 20 연제 : 병원사목
연사 : 프라이어징거 엠마회장

11 : 20 연제 : 병원에 있어서의 사목상담
연사 : 서 요셉 신부

12 : 00 점심

13 : 40 패널디스커션

15 : 00 정기총회

15 : 40 가톨릭의료단체회합

16 : 30 각테일 파티